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형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49 발의연월일: 2021. 1. 13.

발 의 자:최형두·조해진·정운천

이명수 · 김예지 · 한기호

윤영석 · 강기윤 · 안병길

서범수・권명호・정점식

김성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, 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국내 농수축산물의 생산·유통·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. 특히 명절 특수를 앞둔 시점에도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선물 상한가액(10만원)으로 인해 농수축산물의유통과 판매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를 더욱어렵게 만들고 있음.

그러나 2016년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시행 이후 농수축산물에 적용되는 상한을 두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, 내수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정부의 땜질처방이 아닌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

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,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8조제3항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축산물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	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	③
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	
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	
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	
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
	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
	품 및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
	에 따른 축산물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